

과, 건설기계관리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신설(안 제70조의5)

- 1)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계관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발령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
- 2) 점검·정비 전처사와 내역서 발급, 점검·정비 결과으로 인한 부상 점검·정비 및 중고·재생 품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 등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
- 3)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의뢰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, 건설기계관리업자의 고지 의무 규정(안 제70조의6)

- 1)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계관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발령을 규정할 필요
- 2)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압류 및 지당권의 등록여부와 구조·구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
- 3)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가, 검사수수료 고시 제도 도입(안 제93조, 별표 23)

- 1) 현재 검사수수료는 다 수수료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검사 여건 변화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이 미흡
- 2) 검사수수료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하도록 함
- 3) 검사여건 변화에 따른 수수료 개정으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활한 공사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

나, 건설기계감시기준 정비(안 별표 8)

- 1) 대형 건설기계의 분리·운송방법 확인 조문 등 검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
- 2) 대형 건설기계의 분리·운송방법 확인 조문 신설, 사리세레기 및 준설펀 등 태상을 건설기계의 기류유출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미비점 정비
- 3) 검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기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

다, 소형건설기계조종 이원교육 면제 신설(안 별표 20)

- 1) 3톤 미만의 굴삭기 등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이원교육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
- 2)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이원교육이 동일한 경우 1개 기종에 대한 이원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원교육을 면제하도록 함
- 3)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내용이 동일한 이원교육을 면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의견제출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(건설인력기제과, 전화 02-2110-6296, FAX 02-500-7304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일별제고안의 취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lm.go.kr>) 정보마당/입법정보/입법제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,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제고사항에 대한 발족별 의견

제정안	수정안	사유

다, 보내실 곳 :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제과(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-712)

●농촌진흥청공고제2012-136호

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(MON87769) 위해성 심사결과

본신도로부터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「기능성강화 콩(MON87769)」는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동등고시」 제4-8조 및 제4-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「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」에서 심의한 결과 「비의도적 발육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」 되었으며,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(nabic.naas.go.kr)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8월 31일

농촌진흥청장

●농촌진흥청공고제2012-137호

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(GBH119) 위해성 심사결과

바이엘 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「해충·제초제저항성 면화(GBH119)」는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동등고시」 제4-8조 및 제4-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「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」에서 심의한 결과 「비의도적 발육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」 되었으며,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(nabic.naas.go.kr)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8월 31일

농촌진흥청장

●국사편찬위원회공고제2012-17호

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2년 교과용도서 결정 합격 결정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및 「행정편찬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2조에 의거, 2013 학년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 ①/②, 중학교 역사 부도 교과용 도서 결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8월 31일

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

1. 사출 대상 학교: 중학교

2. 최초 사용 학년도: 2013학년도

※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, 성명,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.